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602호  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년 월 일<br>(제 회) |

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충 청 북 도 지 사  |
| 제출연월일 | 2024년 5월 31일 |

#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602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24년 5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2023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예산 집행결과인 세입·세출 결산 보고서에 대한 승인과
- 기금·채권·채무·공유재산·물품 결산 및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세입·세출결산

(단위 : 백만원)

| 회 계 별    | 세입 결산액    | 세출 결산액    | 잉여금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계        | 7,445,124 | 7,009,347 | 435,777 |
| 일반회계     | 6,753,959 | 6,340,756 | 413,203 |
| 특별회계     | 691,165   | 668,591   | 22,574  |
| 소방특별회계   | 335,500   | 314,057   | 21,443  |
| 의료급여기금   | 297,220   | 297,184   | 36      |
| 농어촌개발기금  | 11,543    | 10,768    | 775     |
| 학교용지부담금  | 795       | 787       | 8       |
| 광역교통시설   | 6,091     | 5,944     | 147     |
| 충청북도균형발전 | 38,280    | 38,152    | 128     |
| 지역자원시설세  | 1,736     | 1,699     | 37      |

- 기금 현재액 : 1,258,819백만원
-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
  - 공유재산 : 9,729,890백만원, 물품 : 124,812백만원
- 채권·채무 현재액
  - 채권액 : 449,106백만원, 채무액 : 1,020,788백만원

### **3. 의안전문 : 별 첨**

-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각 85부
-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85부
- 2023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85부

### **4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입**

- 지방자치법 제150조(결산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(결산승인)
- 지방회계법 제14조(결산의 수행)
-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(결산서 등의 제출)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7조(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) 및 제62조(물품의 현황 작성 등)

### □ 지방자치법 제150조(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(결산승인)

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
### □ 지방회계법 제14조(결산의 수행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·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의회,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**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(결산서 등의 제출)**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(이하 “감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□ **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7조(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)**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따른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**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2조(물품의 현황 작성 등)**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